

[일련번호 : 1]

경 기 도 체 육 회

개선·시정 요 구

[제 목] 각종 위원회 규정 개정 및 운영 개선

[소 속 기 관]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

[내 용]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 규정」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연맹은 「규정」 제37조에 따라 사업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자문기구인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경기위원회, 교육·자격검정위원회, 공인위원회, 인사위원회, 홍보·마케팅위원회, 인라인하키 운영 및 경기력향상위원회, 인라인 프리스타일 운영 및 경기력향상위원회, 스케이트보드 운영 및 경기력향상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스포츠평정위원회, 의무위원회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외의 위원회는 이사회 의결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맹은 ①위 위원회 중 경기위원회 규정, 스포츠평정위원회 규정, 심판위원회 규정, 생활체육위원회의 ‘제 규정’만 제정되어 있으며, ②규정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스포츠평정위원회와 사무국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사위원회를

각종 위원회 규정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으며, ③각종 장학제도 및 우수선수 발굴육성지원 등의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기력향상위원회 기능을 경기위원회에서 병행하고 있다. 또한 ④생활체육 롤러스포츠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위원회가 미구성되어 있다.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은 도내 롤러스포츠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조속한 시일 내 연맹 이사회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규정 및 제 규정에 대한 미흡한 점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회장은

가. 제37조에 따라 이사회 자문기구인 경기력향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각 분야별(위원회별)로 기능과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나. 규정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명시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인라인하키 운영 및 경기력향상위원회, 인라인 프리스타일 운영 및 경기력향상위원회, 스케이트보드 운영 및 경기력향상위원회로 구분되어있는 규정을 하나의 '경기력향상위원회'로 통합하여 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

경 기 도 체 육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연맹 경영공시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

[내 용]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이하 ‘연맹’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 규정」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cafe.daum.net)를 통해 ‘연맹’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연맹 「규정」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제3항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56조(경영공시)에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결과, 예산집행내역,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장이 정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연맹은 감사기간 내(****.**.**~**) 확인해본 결과 「규정」 제46조에 따른 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와 동 「규정」 제56조의 공시항목인 ‘이사회 및 총회 회의결과, 예산집행내역,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외부평가 결과 등을 연맹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추후 「규정」 제 56조(경영공시)에 따라 경영공시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회장은

가. 연맹 「규정」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에 따라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조속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연맹 「규정」 제56조에 따라 경영공시 항목(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집행내역,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외부평가결과, 감사결과와 그 외 회장이 정한 것)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경 기 도 체 육 회

개 선 요 구

[제 목] 근로계약 체결 업무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

[내 용]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사무국은 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은 舊연맹에서 전무이사로 활동하다가 ****년 전문체육·생활체육 연맹의 통합 이후 사무국장의 직위로 현재까지 근로 중이다.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제11조(적용범위),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주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의 체결 시에는 반드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조건을 명시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연맹은 사무차장과의 고용관계에서는 주*일 *시간의 근로를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나 사무국을 총괄하며 회계, 사업 등 전반을 관장하는 직원인 사무국장의 고용에 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는 노사 분쟁 발생 시 책임과 권한의 문제 등을 발생시키며 노사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게 되고 합의를

이루기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없고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없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회장은

기본적인 근로관계 규정을 이해하고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무국장에 대하여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경 기 도 체 육 회

권 고 요 구

[제 목] 회계관계 직원 재정보증 미가입

[소 속 기 관]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

[내 용]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 규정」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규정」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에 따라 연맹은 회계업무 수행의 주요기준과 절차를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회계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본회 「회계 규정」 제45조(보칙)에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회계관계 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회 「회계 규정」 제7조(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에 따르면, 회계 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맹은 회계관계 직원의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어주고 소신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 및 회계 관련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무국 회계 운영을 위해 재정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일 현재 연맹은 회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 사무차장, 사무국장, 회장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은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보험 가입에 대해 적극 찬성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회장은 회계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어주어 소신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과 예산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정적인 회계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경 기 도 체 육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회계처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
[내 용]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 규정」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규정」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에 따라 연맹은 회계업무 수행의 주요기준과 절차를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회계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본회 「회계 규정」 제45조(보칙)에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회계관계 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건당 50만 원 이상의 보조금 집행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본회의 「보조금 결정 및 자금교부서」에는 사업 기간 및 예산집행 기간에 맞게 지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연맹의 ****~****년 각종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과정에서 건당 50만원이 넘는 정담회에 대한 분할지출 *건, 보조금 교부 전 집행 *건의 총 *건, *, ***, ***원의 부적정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각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 사항은 <표1>과 같다.

<표1> 2018~2020년도 보조금 지출 부적정 내역 현황

연번	지출일	사업명	지출목적	지출방법	지출금액(원)	부적정 내역
1	**.**.**.	제**회 ○○○ ○○ ○○ ○	정담회	카드결제	***,***	분할지출
		○○○ ○○ ○○○○○			***,***	
2	**.**.**.	제**회 ○○○○○○	정담회	카드결제	***,***	
		○○○○○○○ ○○○○			***,***	
3	**.**.**.	○○○○○	인쇄비	카드결제	***,***	보조금 교부 전 집행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는 건당 50만원이 넘는 집행의 건에서는 정확한 증빙을 하겠으며, 사업별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보조금 교부 전 집행을 하는 행정적 착오를 방지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회장은

보조금 사업 수행 및 집행 간 「회계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올바른 증빙 서류를 첨부하는 등 정산 업무에 철저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